센다가야일본어교육연구소그룹
납부금 환불 규정

제 1 장

총칙

(목적)

제 1 조 이 규정은 학칙에 규정된 학생 납부금 반환 처리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(정의)

제 2 조 학생 납부금이란 입학선고료, 입학금, 시설비, 수업료, 보험료, 교재비를 말한다.

(적용 범위)

제 3 조 본 규정은 센다가야일본어학교, 센다가야외어학원, 센다가야일본어교육연구소부속일본어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입학 예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제 2 장

환불 규정

(환불)

제 4 조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학생이 입학하지 않았을 경우,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과 입학허가서 반납이 확인된 후, 수업료, 시설비, 보험료, 교재비에 대해 환불한다.

2 학생이 입학한 경우 6 개월분의 학생납부금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환불하지 않는다.

3 9 개월 분의 납부금을 납부한 학생이 중퇴할 경우, 재학 기간이 6 개월 이하일 때에는 수업료, 교재비 3 개월분을 환불한다. 재학 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면 환불하지 않는다.

4 12 개월 분의 납부금을 납부한 학생이 중퇴할 경우, 재학 기간이 6 개월 이하일 때에는 수업료와 교재비 6 개월분을 환불한다. 재학 기간이 6 개월을 초화하면 환불하지 않는다.

5　입학 후 계속 학업을 하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와 교재비는 다음 학기 시작 전날까지 중퇴하는 경우에만 환불된다.

(중도 퇴학)

제 5 조　퇴학하려는 학생은 그 사유를 기재한 퇴학 신청서(소정 약식)를 제출하고 교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하지만 퇴학 신청서의 제출과 접수가 6 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불 대상이 되지 않는다. 그리고 학생의 학칙 위반, 출석 불량 등으로 인한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환불 대상이 되지 않는다.

(환불 절차)

제 6 조　환불 절차는 퇴학 사유에 따라 퇴학을 확인한 후 진행하도록 한다.

(1)학생이 귀국할 경우는 재류 카드의 실효를 확인한 후 진행한다.

(2)학생이 취업할 경우는 재류 자격 변경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.

(3)학생이 진학할 경우 입학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.

(4)기타 사유로 중도 퇴학할 경우에는 변경된 재류 자격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.

(지불)

제 7 조　환불은 학생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.

2　환불에 따른 송금 수수료는 학생이 부담한다.

(기타)

제 8 조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그때 협의하여 해결한다.

부칙

1. 본 규정은 2023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된다.
2. 본 규정의 일부 개정은 202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된다.